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51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조승래 · 이광재 · 박용갑
박범계 · 장종태 · 이정문
정일영 · 이주희 · 서삼석
김준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 · 제6항 · 제7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본문 중 “배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배부”를 “등록·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공표에 관한 기간”을 “등록·통지 및 공표에 관한 방법·기간”으로 한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구의 정정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 요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u>배부</u> 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 <u>전자적 방법으로 등록</u>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회의록의 <u>배부</u> · <u>배포</u>) ① 회의록은 <u>의원에게 배부하고</u>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8조(회의록의 <u>등록</u> · <u>배부</u> · <u>배포</u>) ① ----- <u>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며</u>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u>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⑥ 회의록의 <u>공표</u> 에 관한 기간	⑦ ----- <u>등록·통지 및 공표</u>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u>에 관한 방법 · 기간</u> ----- -----.
-----------------------------------	-------------------------------------